
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2년 9월 2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년 7월 27일

3. 정정사유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
- 종류C-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
- 법,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
-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

4. 정정사항

| 항 목 | 정정사유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투자설명서 전체 |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| <u>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 | <u>2등급(높은 위험)</u> |
| 제 1 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종류 C-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<u>직판-랩 (C-W)</u> |
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 | 정기갱신 | - | 작성기준일 업데이트(운용 중인 다른집합투자기구수, 다른운용 자산규모) |
| 제 2 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| 종류 C-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가입자격: 가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.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.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| 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직판-랩 (C-W)</u> 가입자격: 가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.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.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|

| | | 신탁업자 (신설) | 신탁업자 라. <u>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</u> |
|---|--|---|--|
| 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 | 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13.14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u> | 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15.46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u> |
| 제2부. 11.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| 종류 C-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|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<u>직판-랩 (C-W)</u>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<u>직판-랩 (C-W)</u> |
| 제2부. 12. 가. 기준 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|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 | ----- 공고·게시 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 ---- | ----- 공고·게시 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 ---- |
| 제2부. 13. 가. 투자 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| 종류 C-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|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환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<u>직판-랩 (C-W)</u>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<u>직판-랩 (C-W)</u> 환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, <u>직판-랩 (C-W)</u> |
| 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| 정기갱신 | - | 최근 결산기 반영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 |

| | | | |
|--|---|---|---|
| 투자기간별 예시 | | | |
| 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정기갱신 | - |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|
| 제4부. 1. 다. 최근 2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| 정기갱신 | - |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 트 |
| 제 5 부. 2. (2) 임의 해지 | 시행령,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 영 (2022.8.30 시 행) | 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 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1. ~ 2. (생략) 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하 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| 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 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하 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한 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 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5 부. 3. 가. (1) 2) 결산서류 | 법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 |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략) |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제 5 부. 3. 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 | 시행령,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 | -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. ~ 2. (생략) 3. 집합투자업자가 <u>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</u> (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. (생략) | -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</u>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집합투자업자가 <u>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</u> 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. (현행과 같음) |
| 제 5 부. 3. 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 |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 | 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1. ~ 8. (생략) 9. <u>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(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)</u> 10. ~ 11. (생략) 12. <u>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</u> | 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투자신탁의 투자전략</u> 10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</u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| | <p><u>에 관한 사항</u> <u>(신설)</u></p> <p>13. (생략)</p> | <p><u>12의2. 투자신탁의 운용위</u> <u>험에 대한 관리방안</u>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 |
| 제 5 부. 3. 나. (2) 수시공시 | <p>-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</p> <p>- 시행령, 금융투 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</p> | 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 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 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 여야 합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의 결정 및 그 사유(<u>신설</u>)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하 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</p> | 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 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 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 여야 합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</u> <u>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</u> <u>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</u> <u>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</u> <u>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</u> <u>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하 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</u> <u>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</u> <u>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</u> <u>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 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 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</u> <u>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</u> <u>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는 사실 (이하 생략) |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 (이하 현행과 같음) |
| 제5부. 4. 이해관계 인 등과의 거래에 관 한 사항 | 정기갱신 | - | 최근 결산기 반영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 |